

민간차원의 방·실화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최종태*

< 목 차 >

- I. 서론
- II.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주민참여에 관한 필요성과 유형
 - 2. NGO의 개념과 특징
- III. 방·실화 범죄의 현황
 - 1. 방화범죄의 실태
 - 2. 실화(파실범)의 실태
 - 3.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실태
- IV. 주민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V. 결론

I. 서 론

최근에 이르러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형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가혹성을 통한 범죄의 억지적효과(이상안, 1999:120)보다 사전 예방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존재빈도와 순찰력 강화(임준태, 2001.3)와 시민과 경찰력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중점을 두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부담해야하는 공공재의 특질을 갖는 경찰서비스의 최적 조건¹⁾을 경찰순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가시적 활동만으로는 시민의 요청에 대한 응답에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 대경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1) 경찰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순수 공공재의 특질을 지닌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배제된 민간경제만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운 것처럼, 사법제도라는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서 기능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웨이처는 경찰순찰을 공공재라고 보고 이는 ① 시민의 봉사요철에 대한 응답과 ② 범죄예방의 두 가지 측면을 지니는 배제성 원리와 경합성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이상안, 범죄경제학, 서울 : 박영사, 1999, pp.388-390).

이런 상황적 필요에 따라 최근 들어 범죄의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차원의 자율방범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는데 특히 경찰은 경찰개혁을 통하여 자율방범 대원의 지원 등 민간차원의 방범활동을 지원, 강화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완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범죄 발생 억지효과로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살인, 강도, 절도 등 범죄의 증가와 헤킹 등 사이버 범죄의 증가를 들 수 있고, 특히 검거된 절반 이상이 재범자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발전과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및 문호개방 등 세계화정책의 추진으로 마약, 총기, 위폐,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의 증가 내지 거점화로 범죄의 확산에 직면(조선일보, 2003. 4. 28)하고 있을뿐더러, 국내 주요범죄의 증가와 시민 및 이익 단체 등에 의한 다양한 욕구의 동시적 분출 등은 치안수요를 더욱 가중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순찰 활동과 같은 범죄 예방기능 만으로는 시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한계성을 제기하게 된다.

「경찰백서」(2002)에 의하면 전체범죄 발생추세는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발생 원인면에서는 2001년에 발생한 총 범죄 중 부주의 등 실수가 가장 많고 (22.9%), 우발범(19.7%)과 이욕적 범죄(11.1%)의 순이나, 교통범죄를 제외하면 우발성범죄가 가장 많다. 2001년도에 발생한 범죄의 특징을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1회성 모방성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범죄가 증가하였고 중요범죄별 재범 추세는 ①방화(71.8%), ②살인(69.9%), ③강도(68.3%), ④폭력(66.0%) ⑤절도(54.6%)로 방화 범죄의 재범빈도가 가장 높았다²⁾.

이 시점에서 이 연구는 방화와 실화범죄에 있어 사전적 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민간차원의 방·실화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방화와 실화범죄는 고대로부터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되어온 점(최종태, 2001: 24)으로 보아 민간차원의 역할기능이 전통적으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과실범에 의한 실화사건은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8.6%식 증가발생 하였고 인명피해에서는 연평균 5.2%, 재산피해에서는 연평균 20.9%식 증가하였다(행

2) 경찰청, 경찰백서, 2002, pp.79-82.

정자치부, 2001 : 7) 이와 같은 방·실화범죄의 증가추세는 주요 외국(미국, 일본)의 감소 내지 둔화 추세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감소추세를 비교할 때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에 새로운 패러다임³⁾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과실범의 성립을 범죄사실의 불인식과 주의 의무위반에 의한 결과범(이태언, 2001:361)이나 교통사고범죄는 그 동안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신과실이론의 효과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범죄의 전체적인 발생추세와 관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의 차원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의 두려움이란 범죄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으로(이성식, 2001: 10)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신건강의 위협 내지 사회활동(외출 등)을 꺼리게 하는 등 활동의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심지어 사회해체를 가져오는 등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표(2002)에 의하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 치안분야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50.2%로서 국민의 반 이상이 치안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도 56.6%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또한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의식은 안전도가 없다는 반응이 반 이상(51.4%)이지만 이 분야는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으며(97 : 58.4%) 혼자 걷기 두려운 이유로는 ①인적이 드물고(54.0%) ②가로등이 없다(32.4%)는 것과 우범지역(11.9%)의 순으로 들고 있다⁴⁾.

이 연구에서는 최근 공공행정분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범죄예방의 민간참여 방안을 보다 새롭게 구상하여 범죄 예방에 관하여 참여 할 민간 분야의 범위와 주체, 즉 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범위는 민간차원의 범죄 예방의 범위를 전체 범죄 가운데 특히 방화 범죄와 실화범죄에 한정하는데 그것은 방화범죄나 실화범죄는 그 피해가 심각

3) 새시대의 공공행정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지방화되고 민주화 민간화라는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국정관리이며, 국정관리의 필요성을 공공부문의 변혁에 대한 욕구의 확산(협우)에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NGO이다(김종래 외, 2001. 별쇄1).

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2, pp.496-500.

하고 위험성⁵⁾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의 범위에 따라 2장에서는 범죄 예방과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방·실화범죄의 동기와 특성을 그리고, 제3장에서는 방·실화범죄의 현황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의 문제와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힘에 있어 정부간행물과 선행연구 및 문헌을 연구의 도구로 할 것이며 일부지역의 현장임장을 통한 면접 조사를 병행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실무상 적용성을 우선하였으므로 이론상의 취약성이나 논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점등은 차후에 정리, 보완해 나갈 것이다

II.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과정

1.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

1)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참여에 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Alford, 1969 : 21)이라는 견해, 의사결정의 관여하는 견해(Davis smith & Valorio Ross, 1973: 2-4) 협동공급(J. M. Ferris. 1984:324)그리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협동생산으로 간주하는 견해 (Rich. 1981 : 59-76)와 일상적인 시민의 참여 행위와 행정기관과 전적으로 분리된 참여행위는 협동생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시민과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속하는 행위만을 협동생산으로 보는 견해(Warren, Rosemtraub and Harlow, 1984 : 447-464)등이 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 개념이 다의적이지만 종합해보면 참여와 협동의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것은 행정문제는 공·사를 막론하고 참여와 협동이라는 방법으로 공동 노력에 의한 문제해결로 이해가 가능하다 하겠다(윤종석, 2001 :

5) 2003. 2. 18. 09 : 13분경 발생한 대구지하철역 방화사건을 자신과 무관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려는 정신불명증적 인자의 방화로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 339(사망:192, 부상:142) 재산 피해 516억이라는 엄청난 재난이었다.

68) 이와 같은 시민참여의 개념으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주민참여는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②주민참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경우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고 ③정부에 대한 주민의사의 투입과 감시활동의 강화를 들 수 있다.

2) 주민참여의 유형

이와 같은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에 따라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유형에는 ①반대·저항형 ②요구·참여형 ③주장·참조형 ④절충형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반대·저항형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하는 유형이다. 요구·참여형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는 유형이며 주장·참조형은 시민들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유형을 말하고 절충형은 위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유형을 각각 단절된 유형의 운동이라기 보다는 모두 포괄하여 운동의 각기 다른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다(조석주의, 2000 : 17).

3) 주민참여의 제약요인

한국에 있어 국정에의 주민참여는 최근 매우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제약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⁶⁾

첫째, 한국의 행정전통이 중앙집권주의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

둘째, 제도의 미비점, 즉 행정기관 측에서는 주민을 정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고, 시민 측에서는 공식기구나 법적 보장이 없어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 관련정보의 부족이라는 것이다.

6)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1997), pp. 13-14.

2. NGO의 개념과 특징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라는 용어는 국제연합 헌정(제71조)중에서 사용한 정부 이외의 민간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데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NGO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활동단체를 말하는데, 시민단체란 시민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조직되고 많은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山岡儀典. 2000. 1) 이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NGO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활동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①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동하며 ②지역문제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로서 비영리적이고 비정치적이고 순수시민단체인 것을 말한다(조석주 외, 2000 : 25에서 재인용).

NGO의 특징은 L. M Salamon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법인 조직을 NGO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고 있다.

- ① NGO는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 ② 비정부적인 민간조직이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비영리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 ④ 자기관리, 자기 통치성을 가지고 있다.
- ⑤ 자발적인 의사에 대하여 활동한다.
- ⑥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다. 즉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조직이다.⁷⁾

3.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공동생산이론

공동생산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당사자간협력 분업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로 하는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NGO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7) L. M Salamon, *America's Nonprofit Sector*, The foundation Lenter, 1992. 9. 150.

재화를 생산하는 공동 생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생산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⁸⁾.

첫째 : 공동생산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 공동생산이 가능한 서비스의 생산에 어떤 NGO나 주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능력정도의 고려

셋째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NGO참여 유도의 적절한 보상(재정적 지원과 심리적 감정적 보상등)의 충분한 실시로 주민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충족시킬 것이다

넷째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NGO에 대한 의식전환의 선행이다. 즉 NGO와 유관 부서의 공무원이 NGO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영역의 축소나 관련 정보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III. 방·실화범죄의 현황

1. 방화범죄의 실태

1) 방화범죄의 방화동기

성인 방화범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방화동기를 유형화 한 결과 ①복수(revenge)가 5%였고 ②흥분과 범죄 은닉을 위한 방화가(7%)이고 ③사기(8%) 및 반달리즘(Vandalism)에 의한 방화였다는 것이다(Inciardi, 1970) 또한 방화범의 정신의학적 진단결과 지체 및 비정신적 뇌파, 인성 해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적 지위가 낮거나 학력 수준도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이 진단으로 방화범죄의 동기를 ①우연적인 방화 ②정신이상에 의한 방화 ③복수를 위한 방화 ④성적만족에 의한 방화 ⑤관심 끌기 방화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Bradford, 1985 : 98).

8) 경기개발연구원, 전계논문, p.124-125.

이와 같은 주장들은 ①악희(Vandalism) ②방화광(Pyromania) ③이익 사취 목적 방화(Arson-for-profit) ④범죄은닉을 위한 방화 ⑤보복 또는 원한, 그리고 ⑥테러목적방화(Social protest-Terruism)로 종합정리하고 있다(John O.Dehaahn, 1991 : 324).

한편,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방화범은 그들의 방화 동기에 따라 특성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인격적 특징을 주고 성격이나 이상 심리에 원인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방화범의 행위가 병적이기도 하고 분노와 복수⁹⁾등 심적 복합체의 결과로 되며, 성격유형이 무력형, 소심형, 내성적 정신병질로 감정이 축적되었다가 방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이상현, 1999: 353~).

또한 방화범죄의 분류에 있어 사람이 성장에 따라 단계별로 변화한다는 프로이드의 성적에 이르기와 인격구조 이론에 근거하여 성심리학적 발달 단계에 따라 프로이드의 인간은 본래 공격적·파괴적 면과 반사회적 충동이나 감정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인간 마음의 무의식 과정에서 충동·격정·억압된 감정이 나타난다는 정신분석학적 범죄관¹⁰⁾에 근거하고 있다(표창원, 2001 : 3).

2) 방화범죄의 특성

(1) 모방성·연쇄성 범죄

- 9) 개인적 복수는 불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방황하는 것, 이 1대 1의 복수를 1회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인으로는 언쟁, 싸움, 개인적 감정, 또는 복수심을 자극하는 극도의 감정적 상처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선호하는 방화 대상으로는 피해자의 자동차나 집, 또는 개인적 소유물을 들 수 있다.

사회에 대한 복수는 복수에 의한 방화 가운데 가장 위험한 형태. 자신이 사회로부터 배반 당했다고 느낌으로서 일으키는 방화, 일반적으로는 인생 전반에 있어 부적응, 외로움, 고립감, 또는 학대 받았다는 느낌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을 나쁘게만 보는 사람에 대한 반항행위로 불을 지른다. 또한 외모나 건강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괴로워 할 수도 있다. 범행대상은 불특정하며 방화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 이에 관련된 모든 방화범들은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진다.

- 10) 프로이드의 인격구조론은 원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cede)의 3개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원본능(id)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 쾌락원칙으로 비원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동물적인 쾌락추구 단계이고, 자아(ego)는 현실원리에 따르기 위해 긴장해소를 유보하고 욕구충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행동을 검토하게 된다. 초자아(Supercede)단계에서는 인간의 도덕성, 이상, 양심, 윤리성, 규범행동과 관련되는 정신기능이다. 초자아는 성격의 도덕적 무기이며, 쾌락보다 완벽을 추구한다.

방화범죄는 모방성과 연쇄성의 범죄(최종태, 2001 : 33)로서 범죄 수법의 전파성이 강하다. 따르드(Gabriel Jarde)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모방의 산물로 이해하고, 범죄를 성장과정이나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방의 결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모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방의 법칙이라 하고 모방의 법칙의 유형으로 ① 거리의 법칙 ② 위에서 아래로 법칙 ③ 무한 진행의 법칙(고착의 법칙)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조병인, 2000 : 154).

(2) 이익성 · 은폐성 범죄

방화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한다. 채무에 이행을 면탈하거나 물품대금의 지불거부 또는 보험금 사취 및 가옥 임대료 지불 거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기 위하여 방화하는 사례가 있다.

방화 화재는 또한 다른 범죄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범죄(Concealmint of another crime)로서 살인 · 절도 등의 범행 후 방화하여 실화로 위장하려는 동기가 강한 범죄이다.

(3) 접근의 용이성

방화범죄가 다른 범에 비하면 그 실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방화 화재는 정신박약자나 지능이 낮은 사람도 화재 대상물에 접근이 용이하여 들키거나 제지 받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희열감을 맛보기 용이하다. 정신박약자(전체인구의 2~3%)는, 일반범죄자 구성정도가 10%이지만 방화범죄에 있어서는 30%정도 차지하고 있다.

(4) 피해의 심각성

방화범죄는 사람의 고의에 의한 방화임으로 급격한 연소를 위하여 인화성 위험 물질을 사용하거나, 특수 가연성 물질(불소시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가 급격하다 그러므로 연소대상물은 급격히 소훼되고 다수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최종태, 2001 : 37-41).

3) 방화범죄와 경제 이론

범죄와 지역 사회 경제적 여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1세기 전부터 게리(Guerry, 1933) 보케 테렛(Quetelet, 1831)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때의 경제적 주요원인은 경제발전, 도시화, 소득수준, 실업,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및 직업 등이다. 이들 중 방화범죄는 경제적 요건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완과 백미란(Swan and Memwll, 1989)은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 지역의 방화와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이 자율로 인하여 건물 구입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울 때 낮은 임대수입, 불경기로 인한 기업의 도산위기, 실업 증대 등을 원인으로 규명하고 입증하고 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 증세를 보이고 따라서 술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범죄(강력범)와 연결된다는 것이다(Moore : 1983) 또한 실업은 가족 내부문제를 자극하여 가정내의 폭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이상안, 1999 : 87-89)

우리나라도 IMF 시대가정폭력이 증가하였고 가출과 노숙자라는 사회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실제로 방화화재 발생은 1998에는 전년대비 49.1%로 급증하였고, 1999년에는 다시 4.3%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다시 15.4%가 증가하였고 2001년에도 7.6%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특히 1998년도의 급증현상(49.1%)은 IMF 구제금융시대의 경기 불황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4) 방화범죄 발생의 추세

방화범죄는 검찰 사무처리 규정 및 검찰 예규 등에 의하여 형법범 중 살인, 강도, 강간 등과 함께 강력범으로 분류·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화범죄의 발생실태를 분석함에는 전체 강력범과 비교하여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하겠다.

먼저 전체적인 경향에서 지난 10년간의 전체 강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을 보면 <표 3-1>과 같이

1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경기 : 법무연수원, 2002), pp.55-56.

<표 3-1> 강력 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

(1992-2001)

연도	구분	합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1992		9,675	615	2,549	5,447	1,064
1993		11,639	806	2,876	7,051	,906
1994		13,304	705	4,469	6,169	,715
1995		10,852	646	3,414	4,912	,618
1996		12,155	690	3,586	5,688	,721
1997		12,967	789	4,282	5,665	,776
1998		1,546	966	5,407	6,016	1,157
1999		15,633	984	4,712	6,410	1,107
2000		17,780	964	5,349	6,982	1,,278
2001		18,480	1,064	5,546	6,911	1,375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P54에서 재작성)

총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992년에 9,675건(방화:1,064)에서 2001년에는 18,480건(방화:1,375)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방화범에 있어 증가추세는 강간, 강도 다음의 순위이다

(1) 전체적인 경향

방화범죄는 <표 3-1>에서처럼, 1992년도에 1,064건이 발생했으며, 1997년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다가 1998년에 이르러 1,157건으로 급증한 이래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에는 1,375건이 발생하여 전년도(1,278 건)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방화화재의 발생동기는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불만해소를 동기로 한 방화가 매년 30.0%로 가장 높고 싸움이나 정신이상, 비관자살, 가정불화 등을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증가율은 1.3%이다.

<표 3-2> 5년간 방화범죄의 원인별 건수

구 분	97	98	99	2000	2001	증가율(%)
계	2,655	3,056	2,434	2,559	2,709	1.3
가정불화	421	457	264	265	280	-6.9
비관자살	226	96	58	67	73	-18.1
정신이상	176	111	150	105	101	-8.9
싸 움	121	116	95	132	86	-4.5
불만해소	132	159	183	406	254	30.0
기 타	1,589	2,117	1,684	1,582	1,695	6.9

<자료:행정자치부, 화재통계 연보, 2002.P86>

<표 3-3> 6년간 사망 및 부상건수

구 분	'97	'98	'99	2000	2001	2002
건 수	2,655	3,056	2,434	2,559	2,709	1.4
사 망	116	112	99	122	120	1.6
부 상	259	288	270	274	306	4.5
재산피해(백만원)	7,306	9,272	7,878	7,542	8,358	4.6

<자료: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2001. p.85>

지난 5년간(1994-1998)발생한 방화 화재는 연평균 1.3%씩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체 화재가 연평균 8.6% 증가하는 것보다 더 낮은 발생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3-3>참조). 방화 화재는 피해 면에 있어서 <표 3-3>과 같이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사망자가 연평균 1.6%씩 증가하였고, 부상자는 4.5%씩 증가하였으며 재산 피해에 있어서도 4.6%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방화 화재로 인한 피해 및 발생동기는 가정불화, 비관자살, 정신이상, 싸움, 주벽, 기타의 순으로 집계되는데 이것들은 정신 심리학적 범죄판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동기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방화 화재는 전체화재로 인한 피해상황보다 인명피해에 심각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주요 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라 하겠다.¹²⁾ 방화 범죄를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살인은 지난 30년간 그 발생률이 비슷하거나 소폭의 증가세로 보이고 있으며, 강도, 강간, 방화는 3~6 배 증가하였다. 이를 나누어 보면 강도는 약 5.8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하여 방화는 약 5배 증가하였다. 즉 4대 강력 범죄 가운데 방화의 증가율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방화범죄의 발생장소별 분포

방화로 인한 화재는 <표 3-4>와 같이 2001년도 전체 2,709건이 발생(전체화재의 7.5%)하였으며 발생장소별 구성은 ①시장(18.4) ②차량(14.1%) ③호텔·여관(10.2%) ④점포(8.2%) ⑤주택·아파트(8.1%)의 순이다.

<표 3-4> 장소별 방화 발생 구성비

구 분	총화재건수(A)	방화건수(B)	점 유 율%(B/A×100)
계	36,169(100%)	2,709(100%)	7.3(%)
주택·아파트	10,011(27.7)	812(30.0)	8.1
차 량	5,973(16.5)	841(31.0)	14.1
공장·작업장	3,913(10.8)	80(3.0)	2.0
음식점	2,212(6.1)	104(3.8)	4.7
점 포	1,662(4.6)	136(5.0)	8.2
창 고	822(2.3)	31(1.1)	3.8
사업장	591(1.6)	37(1.4)	6.3
호텔·여관	325(0.9)	33(1.2)	10.2

12) 미국의 경우 방화로 인한 화재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FBI의 표준 범죄 보고서(UCR : Uniform crime Reports)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해동안 방화로 인하여 1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화의 대량 살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미국에서 1945년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중 총기를 이용한 경우는 22명을 살해한 것이 최고 기록이지만 1990년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에 대한 방화는 89명을 사망케하였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에서 발생한 저네 화재 중 방화 또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1987년에는 13% 이던 것이 1994년에는 40%가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http://www.safekorea.net/webzine/contents/special/sp03-01.html>에서 인용 요약).

학 교	260(0.7)	19(0.7)	7.3
선 박	117(0.3)	5(0.2)	4.3
시 장	49(0.1)	9(0.3)	18.4

<자료: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2001. P87>

(3) 강력 범죄자의 전과 회수별 구성비(2001년)

방화범을 포함한 강력범의 전과회수별 구성을 <표 3-5>에서 처럼 초범자의 비율은 2001년에 살인이 29.4%이고 강도가 27.7%, 강간이 27.9%, 성폭력 37.1%, 방화가 26.5%로서 ①성폭력 ②살인 ③강간 ④강도 ⑤방화의 순이다.

<표 3-5> 강력 범죄자의 전과 회수별 구성비

죄 명 년 도	살 인	강 도	강 간	성 폭 力	방 화
계	1,109(100)	5,147(100)	5,692(100)	4,329(100)	1,211(100)
전 과 무	327(29.4)	1,430(27.7)	1,591(27.9)	1,610(37.1)	322(26.5)
1 범	140(12.6)	641(12.4)	922(16.1)	670(15.4)	148(12.2)
2 범	102(9.1)	457(8.8)	661(11.6)	410(9.4)	141(11.6)
3 범	94(8.4)	378(7.3)	476(8.3)	292(6.7)	104(8.5)
4범이상	365(32.9)	1,436(27.8)	1,591(27.9)	1,008(23.2)	398(32.8)
미 상	81(7.3)	805(15.6)	451(7.9)	339(7.8)	98(8.1)

(5) 소년방화범과 인구 비

소년 강력범은 <표 3-6>에서처럼 지난 1993년간 40.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소년 강력범은 그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7과 98에 다시 증가하였고 1999년부터는 감소하였다.

<표 3-6> 소년 강력범 인원 및 인구 비(1992-2001)

죄명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	방화
	인원	전년도대비 증감율(%)	인구비					
1992	3,324	-6.8	50.6	93	2,074	1,069		88
1993	4,662	40.3	71.5	116	2,762	1,696		88
1994	5,157	10.6	79.7	62	3,464	636	942	53
1995	4,349	-15.7	67.9	65	2,684	559	967	74
1996	3,902	-10.3	61.6	55	2,391	612	808	36
1997	3,992	2.3	64.8	60	2,996	537	343	56
1998	4,355	9.1	66.2	54	3,647	519	60	75
1999	4,332	-0.5	73.6	53	2,808	513	904	54
2000	3,762	-13.1	66.2	39	2,295	496	870	62
2001	2,994	-20.4	52.7	49	1,668	367	826	84

(5) 정신장애인에 의한 주요범죄 처리 동향

지난 5년간 정신장애인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 상황은 1997년에 2,642건이던 것이 1998년에 0.9%감소하였으나 1999년에 다시 전년대비 17.6%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6.9%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전년대비 24.4%감소하였다.

주요범죄 중 방화범은 1997년에 41명이고 1998년에는 2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는 34명으로 2000년에는 41명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감소(29명)를 보였다.

(6) 방화범죄의 발생상 추세에 관한 평가

방화범죄는 ①차량 ②사람 ③점포 ④호텔·여관 ⑤학교 등의 순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범죄자 가운데 초범자가 26.5%이고 4범 이상의 전과자가 32.8%로 높은 재범율이 있다. 그리고 정신병질자에 의한 방화사건은 97년이래 매년 감소되고 있다. 소년에 의한 범죄는 97년에 56건이던 것이 78년에 75건으로 급증하였

고 99년에는 다시 감소(54건)하였다가 2000년(62건)과 2001년(84건)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방범 순찰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있어 참고 할 필요가 있다.

2. 실화(과실범)의 발생추세

1) 전체적인 추세

지난 10년간 화재발생 상황은 매년 연평균 8.6%씩 증가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증가와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심층화 등 각종 내부가연성 내장재의 증가 등이 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다.

화재 발생추세에 따라 피해상황도 증가되고 있는데 사망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3%씩 증가하였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매년간 연평균 4.9%씩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는 20.9% 증가하였다(화재통계연보, 2001 : 11).

2) 대형화재사고 발생 추세

대형 화재사고는 지난 5년간(97-2001) 발생건수 면에서 매년 4.3%씩 증가하였고¹³⁾, 인명피해에서도 사망 27.7%, 부상 20.8%식 증가하였고 재산피해액은 63.9%증가하였다.

대형화재는 2001년에는 6건이 발생하여 2000년 대비 20.0%가 증가하였다. 사망자는 2001년에 41명이 발생하여 97년 대비 46.8%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과 대비하면 32.3%의 감소를 보았다.

부상자는 2001년에 80명이 발생하여 97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2000년도에 대비하면 7.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 평균 추세는 20.8%가 증가 한 것이다. 재산피해는 2001년에 970백만원이 발생하여 97년 대비 79.1%가 감소하였고 2000년도에 비하면 181.2%감소를 보이고 있다.

13) 대형화재사고란 행정자치부 훈령 제1148호로 규정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으로 이 규정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산 피해액 20억 이상 발생한 화재 규모를 말한다.

3) 화재발생의 원인별, 장소별 화재 현황(10년간)

지난 10년간 주요 화재 발생 원인의 증감율은 ①화용약품(23.5%) ②불티(13.9%) ③가스(13.8%) ④담뱃불(11.2%) ⑤방화(5.7%)식 증가하였고 유류화재는 5.8% 감소하였다.

장소별 화재발생현황은 ①학교화재(11.3%) ②창고화재(9.6%) ③음식점(8.9%) ④차량(8.4%) ⑤주택·아파트(8.1%)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화재통계연보, 2002. p.117).

3. 민간 차원의 범죄예방 실태

1) 주민자율 방범활동

(1) 주민자율 방범대의 유래와 발전

지역사회의 주민 자율방범활동은 1437년(세종19년)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변방지역에서 출몰하는 방·실화 사건 등 범죄와 화재를 지역 단위의 청장년으로 하여금 자위적으로 방위하라는 왕의 칙령에 의하여 자위경방대가 조직되고 병장기를 갖추고 자위적 방범·방화 활동을 하게 되었다(최종태, 2001 : 25).

이와 같은 유래에서 시작된 자율방범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을 통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이·동단위 주민야경대의 조직과 활동으로 이어져 오다가 1962년부터 법적 근거 없는 유급제 방범 제도로 전환되면서 비 자율적 직업인으로 활동하여 왔다. 이 제도는 27여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당시 방범대원 전원(7562명)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주민자율 방범이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공식적 사회통제 기구로 변형되었다(김형청, 1991 : 77 및 오윤성, 2000 : 188) 그 후 1989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주민자율 방범활동

주민자율 방범활동은 지역 주민이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경찰관서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하는 자율 방범 조직으로서 심야 취약 시간에 순찰을 실시하여 범죄신고, 부녀자 안전귀가, 청소년 선도 보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총 3419개 조직에 9만 2천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에 있어 그들의 활동실적은 27,791건의 범죄 신고와 23,891명의 범법자를 경찰관과 협동검거 하였다(경찰백서, 2001 : 139). 이와 같은 주민 자율 방범활동의 효과는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연구에 의하면 치안 분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11.3%이고,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42.1%였는데 이것은 98년도 조사(만족 10.8%)와 비교할 때 0.5%증가하였고 불만족은 98년도의 53.2%보다 11.1%나 감소하여 다소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¹⁴⁾.

(3) 시민에 대한 방범 의식 등 교육

① 시민경찰학교 운영

경찰을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의 이해와 체험의 기회제공으로 주민협력 치안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경찰 학교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는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 교육기간은 주1회식 10주 내외로 진행되며 지역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입교, 수강 할 수 있다.

시민경찰 학교의 교육을 개설한 119개 경찰관서에서 배출한 수료자는 4,089명이며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 청소년 유해업소 활동단속, 시민 고충 면담 등으로 치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경찰백서, 2002: 61).

② 하계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여름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안전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소방관서 견학 및 1일 체험 교실·수련캠프·봉사 활동 등을 방법으로

14)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에 관한 국민의식, 2001.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 강화의식을 어린 시절부터 생활화하려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기초 소방 훈련 및 화재예방·화재대처요령·여름철 안전사고예방 및 위생관리와 기초 구조 구급법·레크레이션 등으로 하고 있다. 2002년도에 어린이 소방 안전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모두 534,137명에 이른다.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unment Design)의 의의와 모형.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범죄로부터의 피해제거 혹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개념으로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대상물건, 장소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물리적 장치를 의미한다.¹⁵⁾ 최근에는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관련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①문이나 창문 등 침입루트의 견고화를 기하려는 프로그램 ②도시공간 활용을 통한 물리적 안전확보 프로그램으로 아파트, 거리, 공원, 공항,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③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④범죄자의 환경여건이나 범죄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전대양, 2002 : 367).

(2) 범죄 취약개소 방범기기 설치 현황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범죄 예상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다. 2001년 중 전국 아파트 중 84.3%에 CCTV가 설치되어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는 CCTV와 무인 기계경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위방범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 은행점포의 98.7%에는 CCTV설치를 하고 자체인력 경비도 39.5%가 금융기관에 배치되어 범죄 예방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1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모형에는 뉴욕시 ①port Authority 터미널과 ②아이이찌형 방법 모델도로 ③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법 설계 모형 등이 있다 (전대양 2002 : 368).

(<표 3-7> 참조).

<표 3-7> 금융기관 방범기기 설치현황(2001년)

점포수	CCTV	무인기계 경비 시스템	자화 경비 인력
18,593	18,364(98.7%)	18,317(98.5%)	7,348(39.5%)

<자료:경찰청, 경찰백서, 2002 : p.140>

3) 자위소방대 운영

자위소방의 개념을 영·미 국가에서는 「방범·방화 활동을 주민의 책임으로 보는 자구적 책임의 전통」¹⁶⁾에 따라 사경비 제도와 함께 발달해온 주민의 자율적 자위조직으로 자기지역이나 직장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화재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활동하는 직장 자율 소방 조직을 말한다.

자위 소방대에는 방화관리 대상의 직장이 조직 대상이 되는데 현재 1급 방화 관리 대상에는 3,730개 대원 437,095명의 대원이, 2급 방화관리 대상에는 125,815 개 대원 3,060,090명의 자위소방대원이 각 직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율적 소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의용 소방대의 조직운영

의용 소방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적으로 참여한 소방보조단체 (Volunteer Fire Service)이다. 의용 소방대는 주로 소방서가 미 설치된 군(郡)단위 이하 지역에서 소방활동을 자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표 3-8> 참조).

의용 소방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소방법(제86조)이고 소방법의 위임에 의하여 시·도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의용 소방대는 무보수의 자원자들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화재시 출동하여 화재진화 업무에 임하는 지역 단위의 자율적 소방조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지역자율 방범대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나 조직에 있어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동수당 등 재정지원을 다소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6) 정진환. 영·미 국가 간의 경찰 제도연구, 인천대학 논문집, 1987. 9. 5.

<표 3-8> 의용 소방대 현황

구 分		총 계	시 지 역	군 지 역		
계	대수			소계	읍지역	면지역
	대수	2,832	1,470	1,362	299	1,065
	대원수	83,835	42,946	40,889	12,117	28,772

<자료:행정자치부, 소방행정 자료 발 통계, 2001 : 139>

의용 소방대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령화하고 기동성도 저하되는 등 사기는 저하되어 있어 사기의 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용 소방대원에게는 1회 출동시 출동 수당을 지급하고 대원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재원은 시·도 비로 충당한다.

출동 비는 1회당 소방사 1호봉(9급) 봉급월액÷3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자녀 장학금은 중·고생은 1년간 공납금 전액이고, 대학생인 경우 매년 6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의용 소방대원의 활동 실적은 <표 3-9>에서 보는바와 같고 1인당 년 평균 활동 회수는 16.6회이다.

<표 3-9> 의용 소방의 활동사항

구 分	계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화재경계	교육·훈련	홍 보
건 수	67,295	11,237	1,892	12,642	21,254	20,810
인 원	1,402,349	168,492	18,498	144,960	693,097	377,302

5) 소방시설의 검사 및 조치

소방시설은 화재 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며 피난 유도하고 진화하는 기계적 시스템을 말하며 이는 규제의 근거를 소방법에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화재 시 연소의 저지 내지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를 방화 설비라고 하는데 이 것의 근거법규는 건축법규이다.

요사이 새로운 유흥공간으로 등장하여 다중의 이용도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에는 연소의 억지와 확산을 방지하는 내장재의 불연화가 기준에 맞게 되어야 하고 방화 구획과 피난 동선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방시설과 방화설비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갖추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인명 피해의 방지 및 피난 유도를 기할 책임이 소방법 상의 관계자에게 있다. 직장에서 이런 분야의 직무를 전담하는 자를 방화 관리자라고 하는데 방화관리자가 행하는 주요업무는 ①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②소화·통보·피난 훈련의 계획 및 실시, ③소방, 방화 설비의 유지관리 및 기타화기 취급에 관한 감독이다.

방화관리의 선임은 시설물의 관계자(시설주등)에게 주어진 법정 의무로 현재 1급 및 2급 방화관리 대상에 모두 방화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전체 소방 점검 대상 업체의 수는 613,371개소이다. 이를 업체 중 소방 시설이나 방화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형사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전문 업체에 대한 법집행 현황은 다음<표 3-10>과 같다.

<표 3-10> 소방법 위반 사건 사법처리 현황

위반 자의 유형	계	관계 자	방화 관리자	위험물 설치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정점 업	공사 업	설계 업	감리 업	대행 기관	제조 업	기타
계	1624	788	261	452	54	2	22	0	7	0	2	36

<자료:행정 차치부, 예방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 2003 : 220>

한편 소방 검사 실시결과 불량 내용이 발생한 대상별 불량내역을 소방설비 분야에 있어, 경보설비가 9,301건 피난설비 분야가 6,813건이고, 방열처리 분야의 미비가 141건이며 기타 건축 분야 913건 전기분야 288건, 가소 분야 375건 등이다. 소방 및 방화 설비가 미비 된 불량 업체는 ①다중이용시설(8,011개소) ②공장(6,624개소) ③여관(3,825개소) ④신종 다중이용 시설(893개소) ⑤호텔(354)의

순이다(행정자치부, 2003: 102).

IV. 주민자율 방범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1. 문제점

1) 주민자율 방범 활동의 문제점

(1) 지역자율 방범대운영의 문제

주민 참여적 범죄예방분야에는 ① 주민의 범죄신고 조직 ② 자율방범대 ③ 시민 단체에 의한 방범활동 ④ 언론 매체에 의한 방범활동이 있으며 이런 주민 방범조직과 연계하여 방범활동에 기여하는 민간경비분야가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 대한 참여자의 적정성학보의 미흡과 자율방범활동의 형식적인 교육·훈련 및 지역사회의 타 단체 등과의 연계 미흡 등에 대하여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자율방범대 참여자의 적정성문제

주민자율방범대원은 무보수로 지역사회의 방범을 위한 순수 자원자이므로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이익단체의 관계 인사등이 포함되어 자율적 방범 활동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친경 인사로 주민에게 과시할 우려마저 예상되어 자율방법자원자 선발의 적정성 유지와 관련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②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저하

자율방법대원이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이라는 의용 봉사정신으로 참여한다고는 하나 참여자는 생업의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임으로 실제로 조직성에 의한 소속감 미흡과 사기저하로 야간·기타시간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자발적 조직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별한 동기부여 없이는 순찰이나 범죄예방활동이 형식화되어 범죄예방 및 주민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제정확보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원할 사기진작방안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자율 방범대원의 교육프로그램의 미비

경찰관의 직무는 보호와 규제라는 상반되는 성격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규제 부분에 대하여는 자율방범대원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행법의 체포 하든가 범죄의 제지 (예를 들어 폭행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제지 등)와 같은 부분은 주민보호차원에서 비권력적 보호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에 대응력 배양을 위한 준 경찰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 수준에 있고 범죄예방에 전문지식이 미약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력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방범 순찰은 기대하기 어렵고, 주민보호라는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

④ 방범관련 민간단체의 관심도 저조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관한 홍보 및 연구 등 간접적인 방범활동을 하는 비정부 조직(N.G.O)으로 한국범죄방지재단, YMCA · BBS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지도육성회 · 녹색 어머니회 · 라이온즈클럽 등의 단체가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관심사나 문제 지향적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공동의 노력(세미나 · 캠페인 등)을 보이는 관심도나 활동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범죄 취약개소 방범기기 설치상의 문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방화범)의 기기를 통한 감시 체계로서 CCTV를 들 수 있다. CCTV감시기기는 전국 아파트 중 83%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기기의 오작동과 긴급상황에 늑장대응 및 관리 주체의 무성의 등의 문제점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못 믿을 무인경비”라는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무인경보기기의 오작동 율이 83%로 불만접수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작년 10-12월 28개 무인경비 업체와 무인경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2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경보율이 평균 83%에 달했고, 경보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비업체에서 법정 기준이(25분)이내 조치를 취한 경우는 34.3%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25분-1시간만에 조치를 취한 경우가 19.9%, 1시간 넘는 경우도 9%나 됐다.

심지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33.1%나 됐다. 이 때문에 최근 3년에는 211건 2001년에는 26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강경희 기자)고 하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¹⁷⁾.

3) 시설주의 관심도 저조

방화 관리자는 소방법에서 선임이 의무화된 소방전문 인력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직장에서 소방 관리자로서 자위 소방대를 조직하고 화재 시 자위적인 진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 해 나가야 한다. 방화 관리자가 자기 책임을 다할 때 개인주거를 제외한 직장의 화재는 방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화재발생 상황에서 볼 때 방화 관리자를 선임한 소방대상물에서 화재의 발생은 전체 화재의 21.3%를 차지하고 15.5%(전체화재대비)의 사망자의 29.5%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방화관리 만족할 만 했다면 피해를 감소 내지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4)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저하

지역 의용 소방대원의 고령화(평균47세)로 소방 보조요원으로서는 기동면에서 부적절하다. 의용 소방대는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무보수의 자발적 단체이므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발휘하게 된다. 사기에

17) 조선일보, 2003. 5. 14 A8 "못 믿을 무인경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보수이외에 자위의 명예와 긍지와 인정감과 같은 정신적인 면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농 지역을 불문하고 의용 소방대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와 인정감이 저조하며 따라서 명예심이나 긍지를 갖기 어렵다. 한편, 명색뿐인 출동비와 자녀 장학금으로는 생업의 지장을 초래하면서 참여하는 동기마련에 미흡하다. 이런 사정 등을 볼 때 지역에서 의용 소방대원으로서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5) 법집행 의지의 미흡

소방법형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 불안전한 취급 등을 하는 제조소등이나 기타 방염 처리를 게을리 한 사업주들은 소방법 위반 사범으로 형법상의 형의 종류인 자유형과 재산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법집행은 소방 특별 사법 경찰관리가 행한다. 2003년, 소방법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소방대상물(613,371개소)에서 1,624(0.26%)을 이법에 따라 형사입건 되였으며 그 중에도 관계자(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방화 관리자, 위험물 설치자를 제외한 설계업자나 대행기관 점거업, 감리업, 공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법집행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것은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행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으나 법의발동이 무자비하면 전제적일 수 있는 것처럼 법의 집행이 지나치게 신중한 것도 법을 무용하게 한다(A.C Germann. 1966 : 28)는 말처럼 법 집행이 미온적이면 법의 기능을 저해하여 법의 억지 효과에 의한 사전예방 효과를 저하하게 될 것이다.

6) 안전불감증의 잔존

오늘날 산업사회화의 진전과 함께 각종 사건, 사고로 재난을 입는 사람이 크게 늘어가고 있다 특히 방심이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종 안전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안전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대형 재난 사고를 경험했으면서도 일과성의 사고로 치부해 버리는 안전불감증이 우리의 생활속에서 불식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 없이 발생한 대형 사고들로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자, 관계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았지만 범죄통계상으로는 각 사건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규정이 추가되었을 뿐이고(조병인, 2000 : 106)과실범이라는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가 적용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런 법태도가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겠다.

2. 개선방안

지금까지 논의해온 민간차원의 방범·방화 관리에 있어 그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① 사람의 현대적 측면과 ② 법적 제도적 측면 그리고 ③ 환경적 측면에서 대안을 구상하려는 것이다.

1) 사람의 행태적 측면의 대안

(1)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 제고

최근 수년동안 대형 참사로 인한 재난의 발생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대구지하철역 방화 참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빈발은 적당주의와 망각에 이라는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한 인간행태를 지적 할 수 있다. 사람의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는 교육이다. 방범과 방화를 위한 현행 교육의 제도에는 시민 경찰학교 운영과 어린이 여름 소방 안전시설을 들 수 있으며 시민 경찰 학교에 대하여는 일부 방송매체에서 찬사를 보낸바도 있다. 안전불감증을 추방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①교육(Education) ②기술(Engineering) ③법집행(Enforcement)의 3E의 원칙에 따라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 해 나가는 것이다.

(2)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의식제고

지역사회 자율방범 대원이나 의용 소방대원이 지역사회 방범, 방화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주민의 범죄 및 화재의 두려움을 감소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① 자율방범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자율방범대원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체계화하여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의 유용성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방범활동의 교육프로그램은 주민 보호라는 기본임무수행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중·고교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마련

미국의 중·고교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것처럼 이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도 범죄예방과 비행 및 학원폭력 등의 폐해를 청소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③ 방범홍보의 강화

범죄에 대한 정보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자기 보호의 원칙”을 강조하고 범죄에 대한 인식은 결국 자기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웃과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범죄대응을 위한 관심도가 제고될 것이다. 범죄에 대응하는 신고나 방범순찰의 성공적 사례는 훌륭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자율방범활동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홍보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문, 잡지, PC통신 등 대중매체와 전단 등이나 지역단위 방송이나 지역신문 등은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 경찰대학 운영

경찰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 시민경찰학교를 개설하고 지역주민에게 주1회식(2-3시간) 10주간 경찰 업무의 체험 등 경찰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협력치안의 기반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의 개설운영의 효과가 가시적이라면 더욱 확대·지속화하여야 함을 물론 교육의 질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차원에서 경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는 전국의 많은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에서 특설과정으로 시민경찰 전공과정을 두고 치안 실태에 적응할 교과과정을 교육하고, 교육재정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경찰이 시민경찰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의 절감과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공동생산의 개념상 효과적일 것이다.

2) 법적·제도적 측면의 대안

(1) 방화범죄의 연구 전담 기구의 설치

우리나라는 방화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통계 관리 마저 불충분한 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화범죄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방화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도 일과성에 불과하여 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방화범죄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적절한 예방대책이 부족하다. 따라서 방화범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할 전담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한국 소방안전 협회와 같은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되어 방화관련 전문가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고 방화범죄 예방에 관한 역할을 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전문가 조직

지역사회의 방화, 방범환경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단체의 자발적 조직을 필요로 한다. 이 조직은 기성의 주민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와는 달리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화재보험회사, 교수, 언론, 전직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등 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상호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지역 등과 합의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체로서 지역 사회 안전문제 실천에 참여하고, 관계 공무원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 협조함으로서 민간 파트너쉽에 대한 공동 생산적 협력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율방범대의 재정지원 방안

지역 자율 방범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제도화이다. 여기에는 다

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이웃감시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제도도입

미국의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 감시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 : NWP)은 1980년대 이후에서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지역 사회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조직 관리는 보안관서(Sheriff's Department)나 관할 경찰국에서 한다. 활동은 1개월에 1회 씩 모임을 갖고 그 동안에 각자가 입수한 지역사회 여러가지 문제와 범죄성 요소를 토론하고 이를 범죄예방 정보화 하에 관내 주민에게 홍보한다.

② 지역 민간단체의 사기 진작

지역 의용 소방대와 자율방범 대원을 다 같이 자원에 의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단체이다. 현재 의용 소방대는 시·도지방조례(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보수, 경비, 보상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비 가운데는 복장 및 장비의 구입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동이나 훈련시에는 지급된 통일된 복장(규정복장)으로 집합하며 1월에 1회씩 훈련에 참가한다. 출동이나 교육·훈련시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사회 행사시 초청하여 자긍심을 제고하는 등 행정당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율 참여가 매우 효율적이며 여론 조성층 역할을 하면서 문제의 인지와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지역 자율 방범대에도 도입하여 적용한다면 주민 자율적 참여에 효과적일 것이다.

(4)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간의 사전협의

신도시 등 대형주택단지와 고층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심의를 할 때에, 건축허가관청은 범죄예방관련기관과 범죄 예방상 문제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건축초기부터 확보하여 건축물의 방범상 안전 유지가 가능하도록 건축관련 법규정을 개정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소방 관련법규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허가 시에는 사전에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근원적으로 확

보하고 있다¹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를 도입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5) 지역방위와 민간방범기능의 연계운영

민방위 업무지원에 관한 규정과 훈련 및 민방위기본법 상의 훈련에 관한 규정¹⁹⁾에 따라 지역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시에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서,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방위를 위한 소집, 훈련시에 우범지역중심으로 배치장소를 선정 배치하고 지역방위 및 범죄예방의 임무를 병행하여 실시가 가능하도록 관계법 규의 유권적 해석으로 제도화한다면 주민의 자율적 범죄예방 참여의 계기가 될 것이다.

(6) 자율방범대 조직강화

현행 자율방범대의 조직은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므로 조직구성원의 선발요건이나 소속감이 미흡하여 조직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실태는 조직과 운영을 범죄예방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주민에게 자율의 일임 하는데 서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웃감시 프로그램(미국)을 경찰국 또는 보안관서에 관리하는 것처럼 자율방범대의 조직관리와 유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관할 경찰관서나 기타 단체가 관리함으로서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시민순찰대(미국:Guardian Angels)가 유니폼과 베레모를 통일적으로 착용하여 순찰을 하면서 범죄예방과 범죄예방교육 그리고 만취자·노약자보호 등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일정한 복장착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치 한다면 자율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뿐더러 대원간의 상호부조 등 친목도모와 결집력의 강화가 가능 할 것이다.

18) 소방법 제8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제8조의 2.

19)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조 5항(민방위 업무지원), 및 제62(훈련)와 민방위기본법 제21조(교육 훈련).

(7) 자율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유지 및 예우

자율참여자의 선발에 있어 선발의 적정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는 지역인사들을 참여자로 선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선발기준에는 주민 스스로가 주민간에 공동연대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거나 범죄 대응력을 실감하고 공동보호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응력이 강한 비정부 조직간의 연계활동의 필요성이다. 해병 전우회나 의용소방대와 같은 자율방범·방재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방범과 방화순찰활동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경찰 및 소방) 간에 협력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의 역군으로 예우하는 관행을 조성하여 봉사자로서 긍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계법규²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하기 위하여 강도·절도·폭력·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되는 때에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 수여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보상금의 지금·의료보호·자녀교육보호·취업보호·장제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예우에 관한 규정사항은 자율방범참여자 등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역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생활관등 건전하고 밝은 영예감과 봉사정신에 의거한 자율적 참여정신이 발휘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3) 환경적 측면의 대안

(1) 범죄 취약 개소 방범 기기 유지·관리 개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흔히 활용되고 있는 것이 범죄 취약 지역의 CCTV 및 무인경비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를 시설의 관리·유지 상태에 대한 시민 불만이 있는 만큼 경비 관리에 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제6조 7조내지 13조.

(2) 범죄취약 지역 방범 등 설치 보완

그동안 경찰의 방범 환경 정화의 노력으로 우범 지대 등에 대한 순찰 강화와 방범등의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이 야간 외출에 있어 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방범등 부족(32.4%)을 들고 있다는데 주목하여 우범지역 방범등 증설을 범죄예방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조 하에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소방·방화 설비의 보완과 법집행 강화

2002년도 소방검사 실적에 의하면 소방검사를 실시한 총 소방대상 중 11%가 화재사고에 무력한 불량개소였다. 이것은 대부분 소방설비분야, 경보 설비분야, 피난 설비분야, 방염분야로서 화재 사고시 인명피해 발생의 요인이 큰 것들이다. 이들 중에 소방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업체는 1.2%에 불과하고 과태료처분을 한 것이 2.8%로 법적 처분을 받은 위반 업소는 전체 불량업소의 4.0%에 불과한 저조한 설정이다. 이런 법집행은 지나친 관용이 되어 법의 억지력이라는 효과를 저하하게 되므로 엄정하고 지속적인 법집행이라는 행정환경조성으로 방·실화 사고를 감소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환경설계를 통한 개선방안

범죄의 원인이 있는 사회는 반드시 범죄가 있다고 하는 범죄사회학적 견해처럼 범죄 원인이 되는 요소의 존재는 반드시 범죄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최근의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 강조되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환경 계획에 있어 주거단지나 아파트의 건축 구조적 측면이 범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건축계획, 설계시점에서 ① 경비실의 배치 ② 단지 주변의 지형여건에 따른 취약개소에 방범등 확충 등 외관상의 방범시설 강화와 ③ 주거 단지의 주동을 방범상의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서 범인의 접근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든지 ④ 주변 녹지공간(아파트나 주택 단지와 인접한 임야 등)에 울타리 치기 등 영역성 확보와 경계 시설의 설치 ⑤ 특히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엘리베이터 투시창 설치 등의 계획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

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방범기기의 설치유지 및 관리(30대 이상 주차시설은 설치의무화)를 철저히 하며 범죄의 여지를 없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적 조치에는 행정지도를 통한 권장 사항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법제화하여 주택 단지나 아파트 등 건설시에 건축공학적 범죄예방기법을 도입하고 또는 범죄예방 기관과 범죄예방상 필요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최종태, 2001 : 43).

5) 소방시설 및 방화설비의 완벽한 유지 · 관리

사고는 대부분의 사람의 잘못과 물건의 불안전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방화범인이 방화 행위를 했어도(불을 놓아도) 대상 물체가 불연화 되어 있다면 연소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과실에 의하여 발화했어도 소방시설이 완벽하다면 기계적 작동에 의한 경보로 감지되고 자동적 진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계적 시스템은 방범기기와 연계하여 관리를 완벽하게 한다면 범죄나 인간 error에 의한 사고원인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기계적 작동으로 사고가 제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방 시설이나 방화설비, 방역 등 연소의 억제나 소화기능을 하는 기기와 CCTV와 같은 방역 기기에 대한 완벽한 유지 · 관리는 매우 중요한 대응책이라 하겠다.

V. 결 론

이 연구는 지금까지 민간차원의 방 · 실화 예방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범죄의 예방 대상을 방화범죄와 과실범인 실화범죄로 한정 한 것을 방 · 실화범죄의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피해도 심각하지만 일반 범죄에 은폐되어 범죄예방의 관심이 저조하고 일과성에 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술적 방법을 택하여 문헌이나 통계등 자료를 근거로 실시하였는데, 주요 이론의 근거는 ① 범죄예방에 관한 일반 이론과 ② 방화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 ③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 주민 참여 이론은 이론

적 근거가 되고 있으면 요즈음 많이 논의되고 있는 NGO이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자료가 되는 방화범죄와 실화범죄의 실태에 있어서는 방화범죄는 1998년에 급증한 것으로 보아 방화범죄와 경제와는 관계가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불만 해소를 위한 방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한편 방화 범죄자 가운데는 소년범과 정신 병질자도 상당 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보호 치료가 요망된다. 한편 과실범인 실화범죄는 지난 10년간 발생에 있어 매년 8.6%씩 증가하였고, 특히 대형화재 사고가 연평균 4.3%식 증가하여 안전 불감증의 잔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검사에 있어서는 그 실시대상이 매년 4.2%식 증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업무량은 소방관 1인당 국민 1,984명이고 소방 공무원이 1인당 평균 30개소에 대한 소방 검사를 실시해 할 정도로 이는 과중한 업무량이라 하겠다.

민간 차원의 범죄 예방 활동실태는 ① 주민 자율방범 활동 ② 소방시설 점검 ③ 소방시설 공사업 ④ 의용 소방대 조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로는 ① 범죄예방정책상의 문제점 ② 지역 자율 방범대 운영상의 문제점과 자율방범 대원의 사기 ③ 방범기기의 기능상의 문제 ④ 방화관리자의 방화지도 미흡과 시설주의 관심 저조 ⑤ 의용 소방대의 사기 ⑥ 온정적인 법집행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① 인간 행태적인 측면과 ②법적, 제도적 측면의 대안 그리고 ③법적 환경적 측면의 대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요약할 때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정책당국의 개선 의지와 국민의 참여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범죄(화재)예방활동은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일차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위적 수단에 의한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 Cliford L. Karchmer가 누가 범죄를 범한자인가에 관심보다는 어떤 곳이 범죄의 목표가 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더 중요하고 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범죄는 그것이 방화이든 실화이든 지역사회의 상황에 익숙한 주민과 경찰 및 소방이 공동노력 한다면 예방이 가능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행정자치부, 소방행정통계 및 자료, 2002
- 행정자치부, 예방소방행정 통계 및 자료 2003
-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 2001
- 경찰청, 경찰백서, 2002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2
- 김형청, “경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90-03.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1991. p77
- 이상안, 범죄 경제학(서울 : 박영사), 2000
- 이상현, 범죄 심리학(서울 : 박영사), 1999
- 이태언, 형법총론(서울 : 형설사), 2000
- 배종대, 형사정책(서울 : 법문사), 2000
- 최종태, 소방학 개론(서울 : 동화기술), 2001
- 김종래 외, “국정관리와 NGO의 역할, 2000, 한국행정학회보 별쇄
- 임준태, 경찰활동과 범죄예방 이론, 2001, 별쇄
- 서성아 외,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에 관한 국민의식, 2001
- 조석주 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 NGO의 지방자치단체
- 이성식,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 두려움, 한국공단행정학회보, 2000
- 노호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001